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씨름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sup>1)</sup>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1)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회계처리 절차를 위해 품의서, 결의서를 실시하고 있으나 1건의 품의서와 결의서로 사업(대회) 전체 지출을 실행 하거나 품의나 지출결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2 \*\*\*\*\* 등 [표1]과 같이 보조사업에서 일정금액이 넘는 지출을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근거로 지출을 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표1] 경기도씨름협회 계약 미이행 현황**

연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2	*****	*, ***,000	훈련용품	길*****
	***** *	*, ***,000	상배제작	기****, 미****
	***** **	*, ***,000	임원단복	대****
	***** **	*, ***,000	선수단복	길*****
2023	***** ***	*, ***,000	상배제작	다****
	***** ***	*, ***,000	물품임대	A****

그리고 보조금 집행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여 하나 [표2]와 같이 증빙서류를 누락하여 지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2] 경기도씨름협회 보조사업 지출 증빙서류 누락 현황**

연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증빙누락
2021	****	***,000	홍보비	비교견적
		*, ***,000	상배제작	비교견적
		***,000	상배제작	비교견적
		***,000	구급차	비교견적
2022	**** *	*, ***,000	마스크	증빙사진
	**** **	*, ***,000	인건비	통장사본
	**** ***	*, ***,000	방역용품	비교견적, 사진
2023	**** *****	*, ***,000	숙박비	일자별 숙박명단, 숙박명세서

※ 연도별 대표적 사례 지적(세부내역 엑셀자료 참고)

**[조 치 사 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1~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지출증빙을 전면 검토하여 부족한 서류의 보강을 실시하고 위 지적된 서류를 보강하여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규약 개정 절차 미준수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씨름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른 변경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협회는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2022년 4월 정기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에 「규약」 개정(안)을 승인요청하였고, 같은 해 5월 본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6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 제1항<sup>2)</sup> 및 제53조 제1항<sup>3)</sup>, 「규약」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위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규약」 개정을 위해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 후 본회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로서 규약 개정(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규약」 변경 절차 미준수

협회는 2022년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20\*\*.\*.\*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후 20\*\*.\*.\*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동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총회 의결 후 협회는 규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본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20\*\*.\*.\* 본회에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요청<sup>4)</sup>하였고, 이후 20\*\*.\*.\* 본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sup>5)</sup>되었다.

협회 「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규약」 개정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번 「2024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이사회 및 총회)에 따르면 당시 협회의 「규약」 개정시 이사회와 총회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확인되나,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규약 개정前 규정<sup>6)</sup>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심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現 규약과 변경 절차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역할 수행 여부

협회는 20\*\*년 정기이사회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바 있고, 이후 정기대의원총회시 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하였다.

20\*\*년 \*\*월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그 규정 제정과 위원의 선임을

4) 경씨협 제2022-056호(2022.05.03.) 「경기도씨름협회 규약 개정(안) 승인요청의 건」

5)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2265(2022.05.17.) 「경기도씨름협회 규약 개정(안) 승인 통보」

6) (개정 前) 협회 「규약」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씨름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4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중 ‘우수지도자, 선수 체육 보상금 대상자 추천’ 관련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년 그 대상자를 본회에 추천하는데 있어,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의결한 바 있고, 이는 과거부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20\*\*년 규정 제정과 위원선임의 의결 행위 시부터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규약 변경 절차의 하자 인정

협회 「규약」 변경 전후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절차, 이전부터 운영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에 비추어 협회의 20\*\*년 규약 개정 절차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협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어 재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절차 진행에 관련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어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총회 구성 규정 미준수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총회를 구성하면서 「경기도씨름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있는 자로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의원의 총회 소집에 관하여도 대리인의 참석, 임원과 중복선임 제한, 그 기능 등 협회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협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운영하였고, 그 기능에 따라 규약 개정, 임원 선임,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대의원구성시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 씨름 협회의장 또는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서 정한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은 임원과 중복되어 선임될 수 없는데, 이 경우를 동조 제8항에서 협회 임원은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총회 구성시 그 자격과 예외 사항을 구분하여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총회 구성 규정준수 미흡

협회는 수감범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정기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협회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각 연도별 총회 개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참석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시군협회의 장을 비롯한 각 부별 등록된 팀으로 추정되는 지도자 또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하였다.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 제1항<sup>7)</sup>에서는 각 호를 통해 대의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군종목단체의 장, 경기도 규모연맹체의 장을 대의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협회 「규약」 제7조 제1항 또한 시군씨름협회의 장과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가 소집한 각 연도별 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의장(경기도 씨름협회장)을 제외한 시·군씨름협회장이 3년간 각각 21명(관리단체 등 포함)이 대상이었고, 그 외 각 부별 등록팀 지도자가 3년간 각각 10명이 대상으로 하여 총회가 소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7)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군종목단체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



[표1] '21~'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구성 현황<sup>8)</sup>

구분	시군씨름협회장(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	등록팀 지도자
2021	수원시(관리단체),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오산시, 양평군 (21)	한승0(우만초 감독), 심우0(야탑중 감독), 연제0 (용인고 감독), 이기0 (초월고 감독), 홍성0(경기대 코치), 이태0(용인대 감독), 최기0(광주시청 감독), 이주0(수원시청 코치), 장덕0(용인백옥쌀 감독) 김기0(안산시청 코치) (10)
2022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관리단체), 의정부시, 시흥시,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오산시, 양평군 (21)	한승0(우만초 감독), 심우0(야탑중 감독), 연제0 (용인고 감독), 이기0 (초월고 감독), 000*(경기대 부장), 방한0(용인대 코치), 최기0(광주시청 감독), 이주0(수원시청 코치), 우형0(용인백옥쌀 코치) 김기0(안산시청 코치) (10) *성명 불명
2023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관리단체), 의정부시, 시흥시,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오산시, 양평군 (21)	황대0(우만초 감독), 심우0(야탑중 감독), 연제0 (용인고 감독), 신창0(초월고 감독), 홍성0(경기대 감독), 이태0(용인대 감독), 최기0(광주시청 감독), 김효0(수원시청 씨름담당), 장덕0(용인시청 감독), 김기0(안산시청 코치) (10)

「규약」에서는 제7조 제1항의 대의원의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약」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사유발생시 예외적인 총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1~'23년도 총회 구성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을 제외하더라도 20개 이상의 시군협회의 장, 즉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자로 대의원 구성이 가능함에도, 각 부별 등록팀 지도자를 대의원을 중복,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규약」 제7조 제1항의 대의원과 등록팀의 장이 중복되어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의원의 정의를 시군씨름협회 장으로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고, 등록팀의 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구성 가능한 경우임에 비추어, 각 조항을 구분,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출처] 협회 수감자료 '2021~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

## 나. 임원 및 대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 미준수

협회는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21명의 시·군씨름협회장과 10명의 부별 등록팀의 지도자를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소집하였다.

「규약」 제7조 제8항은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의 중복 선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명단을 살펴보면, 10명의 등록팀 지도자중 3명이 2023년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임원과 중복됨을 확인하였다.

[표2] 2023년도 정기이사회(임원) 및 총회 구성현황<sup>9)</sup>

구분	정기이사회 임원현황 ※직위생략	정기대의원총회 참석현황(등록팀만 발체)
현황	박옥0, 민강0, 윤문0, 고행0, 양재0, 엄범0, 김홍0 김주0, 김진0, 김진0, 노진0, 박승0, 배수0, 신동0 양경0, 양권0, 이연0, 이재0, 이충0, <u>이태0</u> , <u>장덕0</u> 조현0, <u>홍성0</u> , 홍세0	황대0(우만초 감독), 심우0(야탑중 감독), 연제0 (용인고 감독), 신창0(초월고 감독), <u>홍성0(경기대 감독)</u> , <u>이태0(용인대 감독)</u> , 최기0(광주시청 감독) 김효0(수원시청 씨름담당), <u>장덕0(용인시청 감독)</u> 김기0(안산시청 코치) (감사 제외)

위 등록팀 지도자를 대의원으로 구성이 가능한지는 각설로 하더라도, 규약 제7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되어 운영한 것은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 [조치사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 및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시고, 향후 총회 구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출처] 협회 수감자료 ‘2023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 자료 발체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시스템 미사용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씨름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sup>10)</sup>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협회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

10)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내·외부 문서의 관리를 ‘문서24’를 통해 관리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자체비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화 하고 있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문서의 목록과 내부결재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해지며, 각종 첨부자료 등이 자동 삭제되어 이전 사업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불가능해짐에 따라 제대로된 전자적 기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또한 국도비 및 자체비는 PC와 서면을 통해 보관하고 있으나 분실 및 훼손, 저장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자적 기록화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동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협회의 사무국이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해있는 만큼 본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8월)부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이행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경기도씨름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공시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협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56조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협회장이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 협회현황, 예결산 등 공시하고 있으나 회의체의 결과 및 여비 규정 등 외부에 공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 [조치사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계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경영공시하고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임직원 수당 지급

[소 속 기 관] 경기도씨름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씨름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수당(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국도비를 보조받은 대회에서 임직원을 심판, 진행요원, 운영요원 등으로 배정하고 과업을 맡긴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는 지급으로 강사비의 경우 강사비 지급기준을 따라 지급하되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가지고 있어 자체비로 임직원의 여비수당을 지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씨름협회 회장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 대회를 개최할때에는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운영할 시 이를 잘 반영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